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의 의의  
-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중심으로-

허유경 변호사

## 1.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의 도입취지

- 판매행위에 관한 규제가 권역에 따라 개별법으로 제정된 결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규제 정도 및 제재 수준 등이 상이하였음<sup>1)</sup>
  - 그로 인해 업권별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었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음<sup>2)</sup>
  - 최근 둘 이상의 권역을 아우르는 복합금융상품이 개발·판매되는 경우가 늘면서, 그에 대한 규제가 중첩되거나 상이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sup>3)</sup>
  -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또는 ‘법’)은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 판매과정에 적용되는 행위준칙을 정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의 속성에 따라 빈틈없는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지향함<sup>4)</sup>
  - 금융상품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통합법에 따른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능별 규제 (동일기능-동일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sup>5)</sup>를 바탕으로 금소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음
- 
- 이하에서는 개별 행위준칙에 대한 설명보다는, 금소법과 관련된 입법체계 전반을 평가하고, 다른 나라에서의 수용적합성에 관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 2. 입법체계 관점에서의 평가

### (1) 개별입법 vs 단일입법

- 입법론적으로는 기존 개별입법 방식과 금소법 등 통합법을 통한 동일기능-동일 규제 방식의 효율성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우리 금소법을 입법 모델로 단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나라들에게는 입법체계의 적합성·우월성에 관한 논의가 유의미할 것임

---

1) 신보성(2010) 제35면.

2) 신보성(2010) 제35면.

3) 신보성(2010) 제35면.

4) 이형욱·맹수석(2016), 제208면.

5) 신보성(2010) 제35면.

- 금소법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살펴 보면 결국 **업권별·상품별 규제로 회귀되는 추면이 있음**
  - 예컨대, 금소법상 6대 판매행위 준칙은 대상업종·적용상품·적용대상인 소비자로 다시 세분화하여 나누고 있음(<표 1> 참조)
  - 판매행위 준칙 위반에 대한 제재 또한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표 3> 참조)
- 판매행위준칙은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음
  - ①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공통된 행위준칙: 설명의무, 광고 준수사항(법 제19조, 제22조) 등. 다만, 광고 준수사항은 금융상품 별로 상이함
  - ②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 가능한 행위준칙: 적합성, 적정성,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등
  - ③ 일부 업종(판매채널)에만 적용되는 행위준칙: 적적성의 원칙(법 제18조), 금융 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법 제25조 내지 제27조) 등
  - ④ 개별 업권별 법률에 금융소비자 관련 법규를 잔존시킨 경우: 아래 항 참조

- 금소법은 기존의 업권별 법규에 산재되어 있던 금융소비자보호 및 판매행위 관련 조항을 승계하였지만(<표 2> 참조), 일부 금융소비자보호 규정이 업권별 규정에 남아있는 경우 있음

- 개별 업권별 법규에 남아있는 규정들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음

- ① 은행법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은행은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약관을 보고하여야 함<sup>6)</sup>
- ②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에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sup>7)</sup>

#### 6) 은행법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 ①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 ② 은행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보고 또는 신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 ④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10. 5. 17.]

- 7)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 ③ **자본시장법 제68조(최선집행의무)**: 투자매매업자등은 투자자의 주문을 처리할 때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최선집행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동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집행해야 함)
- ④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 : 법으로 6가지,<sup>9)</sup> 시행령으로 21가지<sup>10)</sup>, 금융투자업규정에 14가지<sup>11)</sup>를 더 규정하고 있는바, 예를 들면 선행매매(투자자로부터 매수·매도의 청약이나 주문을 받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매수·매도하는 행위)는 금지됨
- ⑤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설명의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금소법으로 이관되었지만, 보험회사 고유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감액내역 등에 대한 설명의무)은 보험업법에 남아 있음<sup>12)</sup>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시행일 : 2020. 8. 5.] 제30조의2

#### 8) 자본시장법 제68조(최선집행의무)

-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최선집행기준을 기재 또는 표시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해당 설명서(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된 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에 따른 최선의 거래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최선집행기준의 공표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청약·주문의 집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의 점검·변경 및 변경 사실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9)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1.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 청약이나 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 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서 그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 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3. 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가. 주권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
  -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5.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6.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0)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11)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12)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① 삭제 <2020. 3. 24.> ② 삭제 <2020. 3. 24.>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

⑥ 보험업법 제95조의5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보험회사 등은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함<sup>13)</sup>

□ 이처럼 모든 금융회사·금융상품·금융소비자에 일률적으로 적용가능한 판매행위 준칙은 거의 없음

○ 설명의무 또는 광고규제처럼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행위준칙도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준 및 상품별 성격 등을 반영하여 다시 상품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적합성·적정성의 원칙<sup>14)</sup>도 투자성·대출성·보장성 상품에는 적용되나 예금성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예금성 상품의 경우 상품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위험성이 낮으며, 소비자들이 예금성 상품에 가입하는 이유도 일률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금융소비자보호 및 판매행위 준칙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업권별 법률에 관련 규정을 남겨둔 것은, 개별업권·금융상품 고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금소법과 같은 단일법으로 금융소비자 관련 사항을 규제하려고 하더라도 기존 업권별·상품별 특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법 또는 단일법의 선택 문제는 결국 각국의 상황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보임

○ 입법정책적 판단 시 소비자보호에 대한 철학·규제체계·감독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바,<sup>15)</sup>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음

- ① 기존 금융관련 법체계의 형태: 금융상품별 규제의 상이성·유사성
- ② 감독체계의 형태: 통합형 감독체계인지, 업권별/기능별 감독체계인지 여부
- ③ 금융업계의 상황: 개별권역을 넘어서는 복합금융상품의 존재 여부
- ④ 일반 법제도의 형태: 대륙법 체계인지 영미법 체계인지 여부

---

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시행일 : 2021. 3. 25.] 제95조의2

13) 보험업법 제95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중복계약 체결의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14) 그 유래가 자본시장법에 있었는데, 금융위기 이후 약탈적 대출(predatory loan)이 문제되자 대출의 경우에도 그 필요성이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음.

15) 장법식 (2017) 제71면.

## ○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논의 및 외국에 대한 적용

- (기존 법체계) 우리나라는 기존 금융 관련 법체계가 금소법 제정 논의(2010) 이후에 비교적 균질화 되어(<표2> 참고) 금소법 제정이 쉬워진 측면이 있는바, 기존 법체계의 규제차익이 큰 경우에는 규제가 적은 업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음(반면, 규제차익이 크다는 것은 그 만큼 단일법의 필요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함)
- (감독체계의 형태) 우리나라는 통합형 감독체계에 따라 업권별 법규를 하나의 정부기관(금융위)에서 관리하고 있어, 금소법 제정 과정에서 업권별 의견 조율이 비교적 용이했을 것으로 보이는바,<sup>16)</sup> 단일법인 금소법의 집행도 단일기관(금융위·금감원)이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업권별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에서는 규제·감독기관간의 의견 조율이 어렵고, 단일법을 제정하더라도 법집행이 통일되지 않을 가능성 있음(반면, 감독기관별 법집행 수준이 상이하다는 것은 단일법의 필요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함)
- (금융업계의 상황) 금소법 제정 이전의 우리나라에서는 복합금융상품의 출현 및 업권별 교차판매(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신용카드 회사가 판매하는 보험 유사 상품인 채무면제·유예상품)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규제 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커짐. 금융산업의 분화 및 발달이 상대적으로 더딘 나라의 경우, 금융상품 및 판매채널이 비교적 단순하여 기능별 규제체계를 갖춘 단일 법 체계로 재구조화 하는 작업의 실익이 떨어질 가능성 있음
- (일반법제도의 형태)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택한 대륙법계 국가로서 법률의 통일적인 정비가 용이하고 분석적·논리적 법체계를 지향하므로, 동일기능-동일 규제 원칙의 기본틀도 추상적·분석적·논리적 사고의 귀결이며,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결국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적용이 중요함. 성문법주의를 취하지 않는 나라(불문법·영미법계)에서는 단일법체계로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할 수 있음

## (2) 위임입법의 문제

- 금지사항·준수사항 등 상당수의 행위유형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기존의 업권별 시행령 내용이 금소법 시행령에 포함될 경우, 금소법의 내용만으로 행위 유형을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움

16) 실제로 금소법 입법과정에서도 새마을금고·우체국·농협·수협 유사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예금·대출·보험 상품을 금소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 등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당국의 검사·감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금소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임. 이들 기관은 사실상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결과, 소비자보호의 공백 및 규제차익일 발생할 우려가 있음. 전상수(국회 정무위원회, 2017) 제20면.

- 판매원칙 위반 시 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 등과 같은 민사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판매제한명령, 과태료, 징벌적 과징금 등 행정제재의 부과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법률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행위유형이 하위입법(시행령, 감독규정)에 규정되는 경우 법치행정 침해 및 위임입법 한계 일탈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법규명령은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위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정할 수 있고 (법률의 법규 창조력),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법률유보의 원칙), 제재의 부과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는 특히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됨

## □ 포괄적 위임이 있는 문구의 예시

### ○ 적합성의 원칙 (법 제17조)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적정성의 원칙 (법 제18조)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설명의무 (법 제19조)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법 제20조)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의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의 침해하는 행위
- ② 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하위입법은 유형별 행위준칙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방법을 업계의 변화에 맞추어 신속하고 세심하게 정해야 하며, 금소법 체계 내에서 규제차익·규제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예컨대, 금소법 제3조는 금융상품 유형을 열거하고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으로 분류하면서, 예금성 상품을 “은행업법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상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sup>17)</sup>
- 결국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한 금소법에 의하더라도 대통령령에서 예금 유사한 상품을 적시에 정하지 않으면 금소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규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3. 결어

-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통합규제 체계가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므로 운영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음<sup>18)</sup>
- 특히 하위 입법에 광범위한 위임이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입법의 내용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가 좌우될 것임
- 법률과 달리 시행령 및 감독규정의 제정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참여 및 의견 수렴 절차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은데, 금소법은 업계 및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수 있고, 하위 입법에 양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내용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금소법의 제정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종착점이 아닌, 제도 개선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있음<sup>19)</sup>

---

17) 법 제3조 제1호, 법 제2조 제1호 가목·라목.

18) 윤민섭 (2020) 16면.

19) 이규복 (2017) 제58면.

## <표 1> 행위규제별 적용대상<sup>20)</sup>

행위준칙	대상업종	적용상품	적용 대상
적합성의 원칙 제17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
적정성의 원칙 제18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
설명의무 제19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b>예금성 상품</b>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20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대출성 상품 (시행령 통해 확장 가능성 있음)	금융소비자
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모든)금융상품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은 추가 규제 있음)	금융소비자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2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모든) 금융상품 (다만, 금융상품 유형별로 광고에 포함될 내용 및 금지행위 유형이 다름)	금융소비자
계약서류 제공의무 제23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금융상품 금융상품 자문 계약	금융소비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 업자의 금지행위 제25조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	(금융상품) <sup>21)</sup>	금융소비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 업자의 고지의무 등 제26조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	(금융상품) <sup>22)</sup>	금융소비자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 준칙 등 제27조	금융상품자문업자	(금융상품 자문 관련) <sup>23)</sup>	금융소비자

\* 붉은 테두리: 6대 판매준칙에 해당하는 행위규제

\*\* 푸른 테두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20) 노태석 (2013)을 참고하였으나, 2020년에 통과된 금소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21) 법조문상 특정 금융상품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론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유형을 금시하고 있음.

22) 법조문상 특정 금융상품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론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유형을 금시하고 있음.

23) 법조문상 특정 금융상품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론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유형을 금시하고 있음.

## <표 2> 기존 업권별 규제와 비교<sup>24)</sup>

금소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적합성의 원칙 제17조	×	○ (제46조 적합성의 원칙등)	○ (제95조의3 적합성의 원칙 <sup>25)</sup> )
적정성의 원칙 제18조	×	○ (제46조의2 적정성의 원칙등)	×
설명의무 제19조	○ ( - <sup>26)</sup> )	○ (제47조 설명의무)	○ (제95조의2 설명의무 <sup>27)</sup> )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20조	○ (제52조의2 불공정영업행위의 규제) <sup>28)</sup>	○ ( - <sup>29)</sup> )	○ (제99조 수수료지급 등의 금지 <sup>30)</sup> )
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1조	×	○ (제49조 부당권유금지 <sup>31)</sup> )	○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sup>32)</sup> )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22조	○ (제52조의3 광고)	○ (제57조 투자광고 <sup>33)</sup> )	○ (제95조의4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sup>34)</sup> )

24) 전상수 (2017) 제35면 참고, 조문 내용 추가.

25) 2010년에 신설된 조문.

26) 현행 은행법상 설명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은행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상 설명의무를 부담.

27) 2010년에 신설된 조문.

28) 2010년에 신설된 조문.

29) 금소법 제21조에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유형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고, 기존의 자본시장법에서는 “불공정영업행위”라는 금지유형을 정하고 있지 않아서 해당 행위유형/관련 조문을 확인하기 곤란.

30) 2010년에 전문개정된 조문. 일부 내용만 금소법에 이관되었고, 상당수의 금지행위 유형은 보험업법 해당 조항에 남아 있음.

3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4, 제55조, 금융투자업규정 제50조.

32) 2010년에 전문개정, 2014, 2015 개정 조문. 일부 내용만 금소법에 이관되었고, 상당수의 금지행위 유형은 보험업법 해당 조항에 남아 있음.

3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34) 2010년에 신설된 조문.

### <표 3> 위반시 제재

위반행위 유형	위법계약해지권 (제47조)	판매행위 제한명령 (제49조)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제44조)	정별적 과징금 (제57조)	과태료 (제69조)
적합성의 원칙 제17조	○ 35)	○ 36)	×	×	3천만원 이하 <sup>37)</sup>
적정성의 원칙 제18조			○ 39)		3천만원 이하 <sup>38)</sup>
설명의무 제19조			×	○ 40)	1억원 이하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20조			×		1억원 이하
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1조					1억원 이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22조					1억원 이하

### <참고문현>

신보성,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영업행위 및 집입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 토론회, 2010. 6. 30. 한국개발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이규복,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공청회 진술의견,”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공청회 2017. 9. 25.

이형욱·맹수석,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의 주요내용과 법적 쟁점,” 금융소비자연구, 제6권 제1호, 2016. 8.

장범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의견,”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공청회 2017. 9. 25.

전상수, “금융소비자보호법안,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용안, 검토보고,”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 2017. 9.

정유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법 제정 관련 주요내용,” 법과 기업 연구 제2권 제2호(2012).

35) 금융회사가 판매행위 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일정한 기간 내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요구 가능

36) 금융위는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하는 경우에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제한·금지 가능

37) 기존에 자본시장법 및 보험업법에서 적정성·적합성의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제재(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금소법에서 처음으로 동 원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도입됨.

38) 기존에 자본시장법 및 보험업법에서 적정성·적합성의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제재(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금소법에서 처음으로 동 원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도입됨.

39)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만 손해배상 입증책임이 전환됨. 즉 금융소비자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경우에 금융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함.

40) 일부 판매원칙 위반의 경우(적합성, 적정성의 원칙은 제외함)에 금융회사가 그 위반행위 또는 당해계약으로 인하여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

#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출처: 금융위 2020. 3. 17. 보도자료]

## 1

### 기능별 규제체계 마련

#### ◇ '동일기능 -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및 판매업 등의 유형을 재분류

- ① (금융상품) 금융업법상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분류(§3)

구 분	개 념	대 상(예시)
예금성	은행법상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예·적금 등
투자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신탁상품
보장성	보험법상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보험상품 등
대출성	은행법상 대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출상품, 신용카드 등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직접판매업자(금융회사),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분류(§4·11)

구 분	개 념	대 상(예시)
직접 판매업자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자(투자중개업자 포함)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등
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중간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를 대리하는 자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중개사, 보험대리점, 카드·대출모집인 등
자문업자	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	투자자문업자

## 1. 6대 판매원칙 확대 적용

※ ①적합성, ②적정성 원칙, ③설명의무, ④불공정영업행위, ⑤부당권유금지, ⑥광고규제

◇ **기능별 규제체계를 기반으로 일부 상품에만 적용 중인 판매행위 원칙을 원칙적으로 전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여 소비자보호 강화**

① (적합성원칙)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17)

- 현재 금융투자상품·변액보험에만 도입 → 대출성 상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보장성 상품으로 적용 확대

\*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 있는 상품

② (적정성원칙) 일반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18)

\* 재산상황, 투자경험(투자성 상품), 신용 및 변제계획(대출성 상품) 등

- 현재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해서만 도입 → 일부 대출성·보장성 상품으로 확대

③ (설명의무)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시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18)

- 금융상품 유형별로 필수 설명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이를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록 의무화

※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여전법 등 현행 주요 금융법에 도입되어 있는 설명의무를 금소법으로 통합·이관

**[4]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20)

< 불공정영업행위 유형 >

- ▶ ① 대출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 ② 대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 ③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는 행위
- ④ 연계·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변경하는 행위 등

○ 대출 실행후 3년 경과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금지도 포함

※ 은행·보험 등 업권에서 일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지사항을 정비하여 전판매채널(직접판매, 대리·증개, 자문)에 적용

**[5]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시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 금지(§21)

< 부당권유행위 유형 >

- ▶ ①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 ②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 ③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 ④ 객관적 근거 없이 금융상품을 비교하는 행위 등

※ 금투·보험 등 업권에서 일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지사항을 정비하여 전판매채널에 적용

**[6] (광고규제)** 금융상품 또는 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금지행위 등을 규제(§22)

< 광고규제 관련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

▶ 필수 포함사항

- ①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 ③ 보장성 상품 :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 변경 가능 여부
- ④ 투자성 상품 : 운용실적이 미래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항 등

▶ 금지행위

- ① 보장성 상품 : 보장한도, 면책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
- ② 투자성 상품 :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 ③ 대출성 상품 : 대출이자를 일단위로 표시하여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 현행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여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규제를 금소법으로 통합·이관

## 2. 판매원칙 위반시 제재 강화

- ◇ 판매원칙 위반 관련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

- ① (**위법계약 해지권 신설**) 금융회사의 **판매행위규제<sup>\*</sup>** 위반시 소비자에  
대해 일정기간<sup>\*\*</sup>내 해당 계약의 해지요구권 부여(§48)

\*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중요사항 설명, 거짓·왜곡·누락 금지),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

-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가능

- ② (**손해배상 입증책임**)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시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전환(§44)

- ③ (**징벌적 과징금**) 주요 판매행위규제<sup>\*</sup> 위반시 이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 부과(§58)

\* 설명의무(중요사항 설명, 설명서 제공),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필수 포함 사항, 금지 행위)

- ④ (**과태료**) 6대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sup>\*</sup>  
또는 3천만원 이하<sup>\*\*</sup>의 과태료 부과(§69)

\*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위반 등

\*\* 적합성·적정성 원칙 미준수 등